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평등·가족 정책 추진 과제(안)*

초록

- ▶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 정책은 새로운 정책 환경과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함.
- ▶ 정부 국정과제에는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와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비롯하여 젠더폭력 대응,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과제가 포함되는 등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과 영역이 확대되었음.
- ▶ 특히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고용평등 분야의 정책 기능이 새롭게 이관되는 등 부처의 역할과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소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정책을 ▲성평등 거버넌스 및 성주류화 ▲고용평등 ▲젠더폭력 대응 ▲성·재생산 건강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환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성평등 거버넌스·성주류화 정책이 국정과제에 명시되었으며, 젠더폭력·성재생산건강 정책 수요 부응을 위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따라 고용평등 분야에서의 정책 영역 이관 등 새로운 정책 과제와 수요 등 현안 지원 필요가 높아졌음. 또한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정책 비전을 가지고 성평등가족부가 소관 부처로서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 ▶ 이에 성평등 거버넌스 및 성주류화 정책, 고용평등 정책, 젠더폭력 대응 정책, 성·재생산 건강 정책,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환경 변화와 주요 현황을 검토하여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안함.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송효진·최유진·김동식·구미영·이동선·정연주·권도연·성경(2025). 새정부 성평등·가족 정책 지원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정책 환경·현황 및 과제

가. 성평등 거버넌스·성주류화 정책

○ 정책 환경 및 국정과제

- ▶ **(정책 환경)**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OECD 등 국제사회는 모든 부처의 공동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성평등을 개별 정책들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생애과정과 정책과 부처를 연결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OECD, 2025).
 - UN 등은 성평등을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만드는(System-wide strategy) 방향의 실행 계획을 강화하고 있음(UN: 2017, UN Women: 2023).
-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성평등 전담부서 확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개편 추진

○ 성평등 거버넌스 정책 과제

- ▶ **(정책 현황 및 한계)**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범정부 성평등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정책 권고·조정 및 이행관리 권한과 실무지원체계가 미흡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부처 고유 업무에 성평등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성평등 정책 범위가 팔목할 만큼 확장되지는 못하였고, 담당관 협의체도 정보공유 중심으로 운영됨.
-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관리 기능 강화
 - 관계부처에 대한 정책개선·제도정비 권고와 이행계획·결과 보고 의무, 위원회의 정기적 이행점검 및 국무회의 보고 근거를 마련함.
 - 범정부 성평등 중점의제의 선정·협의·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평등가족부가 연차별 중점의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부처별 이행과제를 확정한 후, 정부업무평가 또는 주요정책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성과를 관리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전문역량 및 성평등정책 총괄기능 강화
 - 성평등 정책 분석·성별통계·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책 성주류화와 조직 내부 성평등 관리의 협업구조·성과목표 및 소관부서의 실행 책임을 강화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기반의 범부처 공동 성평등정책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 성별임금격차, STEM 분야 성별 균형,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공동의제를 대상으로 공동연구와 정책모형을 개발하고,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양성평등위원회 사무국 설치
 - 성평등가족부 내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의제 발굴·정책 권고·이행점검, 범부처 공동과제와 담당관 협의체 운영 및 성과분석·정책환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함.
 - 성평등 의제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 여성농어업인·여성과학기술인·여성기업 지원 분야와 AI·디지털, 산업, 공간·교통, 재정 및 기후위기 등 새로운 성평등 의제 관련 부처로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부처 정책 전 과정의 성평등 통합 및 고위직 책임성 제도화
 - 정책기획·예산편성·집행·성과평가 전 과정에 성평등 검토와 환류 절차를 도입하고, 주요 정책의 성평등 성과를 부처 평가와 고위직 업무성과에 연계함.

○ 성주류화 정책 과제

- ▶ **(정책 현황 및 한계)**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 안착을 이끌어 왔음.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 의한 성평등 개선 성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됨.
-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성별영향평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명칭 변경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의무 강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국가통계위원회 중 성인지 통계 분야 당연직 추가, 성인지 통계 협의회 구성 및 강화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 및 효율화 도모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확대 및 현안 대응력 강화, 지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확대 등
 -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및 부처 책임성 강화
 - 국가 성평등 계획 연계 강화, 성과 평가 환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성과지표의 질적 수준 제고, 예산서 중 소관 표기 등
 - 성인지 통계의 생산 강화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통계 유형별 생산 강화, 지역 이슈를 고려한 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통계생산기관의 통계책임관 및 담당자의 성인지 통계 역량 강화 등

나. 고용 평등 정책

○ 정책 환경 및 국정과제

- ▶ **(정책 환경)** 양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율의 꾸준한 상승, 고용율 격차 축소, 30대 여성의 M자형 경력단절 곡선 완화 등 성과가 나타남. 그러나 질적 측면의 격차는 여전히 견고하여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27년째 1위이며, 노동시장 내 성별, 고용형태, 업종이 중첩되어 구조적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임. 육아휴직 등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서 성별·사업장 규모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국정과제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 국정과제 97의 고용 평등 관련 주요 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는 사전적, 집단적 고용 성차별 시정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국정과제 95에서는 남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일·생활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국정과제 91에 고용평등 정책과 관련이 있는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포함됨.

○ 고용 평등 정책 과제

- ▶ **(정책 현황 및 한계)** 고용 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인데, 2025.10.1. 이후로 성평등가족부가 고용 평등 정책의 총괄부처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 성평등가족부의 직제 규정을 중심으로 고용 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의 지원 중심으로 담당 정책분야가 규정되어 있어서, 고용노동정책의 성주류화나 직장 내 성평등 및 젠더폭력 관련 정책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고용노동정책의 성주류화에 있어 고용평등총괄부서와 성주류화제도 부서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 정책의 성주류화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 역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관련하여서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현 정책은 여성경제활동참여 촉진 정책 중심으로, 고용상의 성차별과 성별 격차 해소 관련 정책이 미비한 상황임.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제도)가 단지 정보 공개에 머물지 않고 고용 성차별의 사전적, 집단적 예방 및 자발적 시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강화된 제도가 필요함.
- 성평등가족부의 고용 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정책현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가 사실상 유일한 전달체계인 현 상황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고용 평등 정책 관련 새로운 의제들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함.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법·제도 기반 측면에서, 성평등부가 여성고용노동정책 총괄부처로서 역할과 권한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 로드맵 수립 필요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핵심 의제로 삼아 관련 과제를 선별 구성하고, 타부처 기본계획의 성별 임금 격차 관련 과제 이행을 검토·협약하는 총괄 기능을 강화
 - 정책 핵심 수단으로, 고용상 성차별 개선 정책의 중심적 역할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AA제도 설계. 성평등가족부의 고용상 성차별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고용 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중장기적으로 설립할 필요
-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을 활용한 고용노동정책 성주류화 강화
 - 고용서비스·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우선 순위로 추진 필요
 -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 완화를 정책 목표로 확립
 - 지역소멸·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새일센터 고도화 및 기업협력·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돌봄종사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저임금·불안정 여성노동자를 위한 다부처 협력 정책 추진
 - 직무평가를 통한 돌봄노동 평가절하 실태의 분석

다. 젠더폭력 대응 정책

● 정책 환경 및 국정과제

- ▶ (정책 환경) 여성폭력은 유형 간 경계가 뚜렷하게 분리되기보다 정서적 통제, 스토킹, 디지털 기반 괴롭힘, 친밀관계 폭력 등이 중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의 확산으로 피해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 국정과제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국정과제는 기존의 분절적 지원과 사후 대응 중심 체계를 넘어,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제도적 보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됨. 피해자가 경험하는 복합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제폭력 등 기존 법·제도 경계에 놓여 있던 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함.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기반 탐지·차단,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음.

● 젠더폭력 대응 정책 과제

▶ **(정책 현황 및 한계)** 여성폭력은 신체적·성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통제, 스토킹, 디지털 기반 괴롭힘 등이 결합되는 중첩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친밀관계 폭력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신종범죄 대응, 디지털 환경 대응,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 확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366 통합지원단 확대 운영, 해바라기센터 및 통합상담소 운영 내실화 등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 확대, 집중단속 실시, 수사 기법 고도화, 전문 교육 운영 등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플랫폼 환경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탐지 체계 구축, 글로벌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 제도 도입 논의, 고위험군 선별·밀착 보호, 기술 기반 보호조치 확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개념 재정립, 사법기관 인식 개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온라인 기반 피해 대응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여성폭력의 중첩성, 친밀관계 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확산 등에 대응하여, 여성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와 수사·지원·플랫폼 대응 구조를 실질화하고, 중장기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여성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체계와 수사·플랫폼 대응 구조 실질화
 - 교제폭력은 현행 법률상 분절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관계 기반 폭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법·제도 정비
 - 디지털성범죄의 기술 발전과 플랫폼 구조 변화에 따른 진화에 대응, 개별 범죄 유형 중심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통합적 기본계획 수립 및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유형별·대상별 분화로 인한 연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지원단 운영, 기관 간 협력, 사례관리 연속성, 정보연계 체계 실질화
 -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있어 위장수사, 집중단속, 수사기법 고도화 등 도입된 제도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적 수사역량과 전문인력 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중앙·지역 피해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 연계, 회복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고도화
 -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통 대응을 위해,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투명성 제고, 자체 위험관리 유도 장치 마련
 -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이 수사·사법·지원체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재원·교육체계 지속적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인신매매 대응체계 구축, 페미사이드 데이터베이스 및 사망사건 검토체계 도입, 고령 여성폭력 대응체계 마련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

라. 성·재생산 건강 정책

○ 정책 환경 및 국정과제

▶ **(정책 환경)** 성·재생산 건강 정책은 단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 고위험 임신·출산, 분만·신생아 의료체계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기존에 인구정책이나 기혼여성 중심 모자보건정책의 일부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되어 성·재생산 건강을 생애 전반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이자 건강권의 문제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강화, 국정과제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 국정과제의 가장 큰 의의는 성·재생산 건강을 단순한 출산 장려나 모자보건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권·성평등·노동권·의료접근성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임. 특히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남성 청소년 접종 확대, 배우자 유·사산휴가와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은 성·재생산 건강을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 노동시장, 가족정책이 함께 보장해야 할 권리 영역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음.

○ 성·재생산 건강 정책 과제

▶ **(정책 현황 및 한계)** 성·재생산 건강정책은 국가계획에 포함되고 관련 연구도 축적되면서 의제화와 정책 설계 기반은 진전됨. 다만 별도의 법적 근거와 국가 기본계획은 아직 부재하여, 전체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완 상태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에 성·재생산 건강 의제가 반영되어 정책 틀은 확장됨. 관련 연구와 성별영향평가도 진행되어 근거 생산은 강화됨. 그러나 성·재생산 건강 영역은 정책적·사회적 쟁점이 많이 추진되지 못한 과제가 많음.
- 생리용품 지원은 월경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정책 담론상 성과가 있음. 여성청소년 바우처 확대, 가맹점 확대, 공공생리대 비치 확산(올해 7월부터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중), 안전성 모니터링 등은 실제 이행 성과로 평가됨. 반면 생리휴가·생리공결은 활용 실태와 기관별 운영 편차가 남아 있고, 공공생리대는 전국 표준 운영기준이 부재하며, 지원은 여전히 선별적임.
- 피임 접근성 및 성매개감염 예방 강화 관련 피임도구 판매 현장(약국·편의점 등)의 접근성 개선은 정책 이행이 불명확함. HPV 예방접종은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 여성청년 중심에서 유지되고 있어, 남학생 확대와 9가 전환은 아직 미이행 또는 부분 이행 수준임(올해 5월부터 만 12세 남성 청소년 포함).
- 임신중지 상담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 관련 위기임신 상담체계와 모바일 상담채널 운영은 상담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성과가 있음. 그러나 대체입법 부재로 인해 이 체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까지 포괄하지는 못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은 최근 발표되었으나(2026.9.16), 여전히 이용 주수와 접근성 등의 이슈는 남아있는 상태임. 결과적으로 상담은 일부 진전됐지만,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공백은 지속되고 있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통계 공표, 부작용 자료 구축,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은 안전성과 관리체계 강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소비자 관점의 통합 정보 제공, 의료기관 비교, 환자 권리 보장, 중장기 건강영향 및 관리체계는 여전히 부족함.
- 생식독성 예방 및 생식건강 보호 관련 출생코호트 구축과 산재보상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됨. 그러나 생식독성 연구 성과가 성·재생산 건강정책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음.
- 장애친화 산부인과, 결혼이민자 통합가족센터 서비스, HIV/AIDS 관리대책, 분만취약지 협력체계 등은 취약집단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접근성 개선 노력으로 평가됨. 그러나 청소년 대상 생식건강 정보·검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HIV/AIDS 분야도 구체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며, 일부 분만취약지 사업은 실효성 문제가 있음.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재추진
-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
- 범정부 협의체 및 성·재생산건강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정보 접근권, 상담·의료서비스 연계, 자기결정권, 안전성,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현행 정책을 재구성
 - 성교육 및 성건강 정보 관련 포괄적 성교육 도입,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고도화, 학생 성건강 건강검진 항목 추가와 의료연계 강화
 -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확대, 단순 생리용품 지원에서 건강관리로 전환, 월경 건강권을 교육권·노동권과 연계, 취약집단 맞춤형 지원 강화
 - 피임 정보·교육 접근권 강화, 성매개감염 인식 강화 및 조기검사와 치료 등 건강관리 체계 구축, HPV 접종을 남성청소년 전반으로 조속히 확대 및 9가 백신으로 전환
 - 임신중지 관련 대체입법의 신속한 마련, 약물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사각지대 점검 및 안전한 사용·접근권 보장, 권리 기반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 관련 난임 치료·시술의 안전성 강화, 난임 환자의 알권리/자기결정권 보장, 건강영향평가 및 데이터 구축, 난임치료휴가 및 노동권 보장
 - 생식독성 국가관리체계 구축, 감시/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업무상 유해 노출과 임신소모 및 조산의 산재인정 기준 구체화 등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강화
- 생애 전반에서 남녀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남녀 모두의 청소년기, 비혼기, 임신·출산기, 완경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등 전 생애로 확장
- 사회적 취약집단 특성을 고려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LGBTQ+), 기타(학교 밖 청소년, 젠더폭력 피해자, 교정시설 수용자, 농어촌·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특성을 고려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

마. 성평등 기반 가족 정책

○ 정책 환경 및 국정과제

- ▶ (정책 환경) 가족 변화로 인하여 법적 가족·핵가족 중심의 가족 단위를 벗어나 가족정책 수요가 다변화되고,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결혼 이주배경 중심 현행 다문화가족을 넘어선 이주배경가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대. 가족 부양·돌봄에 대한 가치 변화 및 일·생활·가족의 균형에 대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 및 젠더화된 돌봄이 문제됨.
-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지원, 국정과제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중 생애주기별 고립 대응 정책
 - 가족정책 관련 국정과제들은 국정목표 4의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에 포함되어 있음. 가족정책이 인구정책 내에 포함된 지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아이돌봄지원 확대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 양육지원 강화 등이 중심 내용으로 구체적인 정책 고도화 방향이 담겨 있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사회적 고립 대응 의제가 포함된 의의가 있음.

○ 성평등 기반 가족 정책 과제

- ▶ (정책 현황 및 한계) 성평등가족부의 현행 가족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근거 법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음. 가족정책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확대 강화 기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타 정책 및 지원과의 정합성, 정책 실행의 고도화, 정책 확대에 따른 정교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양육비선지급제도는 제도 운영의 안착이 주요 과제임.
- 인구·가족구조 변동, 이주민 증가라는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있어 이주배경 가족·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의 변화하는 정책 수요 반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정책 중 국정과제에 정책 강화가 명시된 대표적인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원 확대 및 정책 고도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지속 과제라 할 수 있음. 성평등 정책에 있어 돌봄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의제이지만, 성평등가족부가 돌봄 정책에 관여되는 지점은 아이돌봄지원정책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지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영역으로, 성평등 가족부가 성평등 관점에서의 돌봄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논하기에는 현재의 정책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음.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기업에서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 이에 비해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친화 정책은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 실시 수준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운영과 제도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정책 추진 과제 제언)

- 가족정책의 확장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편, 가족정책기본법(가칭)으로 개정
 - 기본법 정비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가족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 위원회 등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근거 마련
-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정책적 포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가족지원정책에 있어 타 정책과의 체계·정합성 정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비선지급 등 각종 아동양육 지원 수당 제도 간 관계, 체계 정합성 등에 대한 정비
- 정책의 고도화와 실효성 제고
 - 양육비선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안착 및 양육비이행지원 제도 운영 고도화
 - 아이돌봄지원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지속
- 인구·가족구조 변동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포용성 제고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외로움) 이슈 대응 및 다양한 생활공동체·상호 돌봄 관계의 정책적·제도적 포용
 - 이주·아동·여성·가족형태 등 인권보장 관련 국제 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및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및 공론장 마련
- 성평등 기반 가족 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 강화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을 “성평등한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문화된 영역의 활용 및 강화
 - 가족 돌봄 지원 정책에 있어 아이돌봄지원 정책 역시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성평등한 가족·사회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명확화
 -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가족 돌봄 등 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연계 필요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따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고려한 통합돌봄체계 관련 정책 과제 발굴

3 정책 추진 과제 종합 제언

정책 영역	정책 추진 과제(단기·중장기 구분)		
	법·제도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	정책 개선 과제	새로운 정책 수요 및 주요 의제
성평등 거버넌스 정책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 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관리 기능 강화(단기) - 법정부 성평등 중점의제의 선정·협약·성과관리체계 구축(단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전문역량 및 성평등정책 총괄기능 강화(중장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약제 기반의 범부처 공동 성평등 정책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단기)	- 양성평등위원회 사무국 설치(중장기) - 새로운 성평등 의제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중장기) - 부처 정책 전 과정의 성평등 통합 및 고위직 책임성 제도화(중장기)
성주류화 정책	「성별영향평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명칭 변경(장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의무 강화(장기)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한 국가 통계위원회 중 성인지 통계 분야 당연직 추가(단기) - 성인지 통계 협의회 구성 및 강화(단기)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장기) - 성별영향평가의 효율화 도모(단기) - 성인지 예산 성과 관리 강화(단기) -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단기) - 성인지 예산 효율화(단기) - 성인지 통계 담당자 역량 강화(단기)	
고용 평등 정책	- 여성고용노동정책 총괄부처 역할 정립 - 고용 성차별 개선 정책의 중심적 역할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AA제도 설계(단기) - 고용평등정책 전담기구 설립(중장기)	- 고용노동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단기) - 일·생활 양립(유연근무제 포함) 정책의 성평등한 보완 정책 추진(단기)	- 지역소멸, 기술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일센터 고도화(단기) - 저임금, 불안정 여성노동자 관련 정책 추진(단기)
젠더 폭력 대응 정책	- 교제폭력(친밀관계 폭력) 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단기)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적 기본 계획 수립(중장기)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중장기) -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단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중장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단기)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중장기)	- 인신매매 대응체계 구축(중장기) - 데이터 기반 젠더폭력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중장기) - 고령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중장기)
성·재생산 건강 정책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재추진(중장기) - 국가 단위 성·재생산 건강 기본계획 수립(중장기) - 법정부 협약체 및 성·재생산건강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중장기)	- 성교육 및 성건강 정보 강화(단기, 중장기) - 월경 건강권 강화(단기, 중장기) - 피임 및 생매개감염 관련 인식제고와 서비스 접근 제고(단기, 중장기) -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보장(단기, 중장기) -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 접근성 제고(단기, 중장기) - 생식건강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단기, 중장기)	- 생애 전반에서 남녀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청소년기, 비혼기, 환경기 및 중장년기, 노년기의 등 생애 전반 정책 포괄)(중장기) - 사회적 취약집단 특성을 고려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LGBTQ+), 기타(학교밖 청소년, 젠더 폭력 피해자, 교정시설 수용자, 농어촌·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특성을 고려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중장기)

정책 영역	정책 추진 과제(단기·중장기 구분)		
	법·제도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	정책 개선 과제	새로운 정책 수요 및 주요 의제
성평등 기반 가족 정책	가족정책 추진 기반으로서의 기본법 전면 개편(단기)	- 가족지원정책에 있어 타 정책과의 체계·정합성 정비(단기~중장기) - 정책의 고도화와 실효성 제고(양육비선 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안착 및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운영 고도화, 아이돌봄 지원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지속)(단기)	- 인구·가족구조 변동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포용성 제고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외로움) 이슈 대응 및 다양한 생활공동체·상호 돌봄 관계의 정책적·제도적 포용(중장기) - 이주·아동·여성·가족형태 등 인권 보장 관련 국제 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및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및 공론장 마련(단기) - 성평등 기반 가족 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 강화 및 의제 발굴(통합 돌봄체계 관련 정책과제 발굴 등)(중장기)

출처: 송효진·최유진·김동식·구미영·이동선·정연주·권도연·성경(2025). 새정부 성평등·가족 정책 지원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7-159면을 토대로 수정 보완함.

주: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표기함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송효진·최유진·김동식·구미영·이동선·정연주·권도연·성경(2025). 새정부 성평등·가족 정책 지원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OECD(2023). Toolkit for Mainstreaming and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ddef555-en>, 검색일: 2026.03.05.)

OECD(2025). Gender Equality in a Changing World: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Gender Equality at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808086f-en>, 검색일: 2026. 03. 17)

United Nations(2017). System-wide Strategy on Gender Parity (2017-2028). New York: United Nations.

UN Women(2023). UN-SWAP 2.0 FRAMEWORK & TECHNICAL GUIDANCE.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